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2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62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 3. 21.자 개정 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취약계층 청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안 제5조)
4)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개정된「청년기본법」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21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김동성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설재영, 박순호, 김세원,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양유환, 함미정, 최혜연, 신진미, 최미자, 이원배, 송용석, 김태민, 박용준, 김명현, 오세길, 정능호(19인)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 3. 21자. 개정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청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안 제5조)
라.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2026. 8. 28. ~ 2026. 9. 3.(7일간)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년의 건강 증진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 라. (생 략) <신 설> 마.·바. (생 략) ③·④ (생 략)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청년의 건강 증진 바.·사.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 교육 ·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